
과업지시서

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(안)

2026. 9.



조선대학교

1. 개 요

가. 입찰명 : 실험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

나. 소재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선대길146(서석동) 조선대학교

다. 계약기간 : 2026. 10. 1. ~ 2028. 9. 30.

라. 지정폐기물 발생 예상량

분류	항목	단위	발생량	비고
폐기물 위탁처리	폐시약(고상/액상)	ton	4.65	
	기타고상	ton	5.5	
	공시약병	ton	0.335	
	순환수거비	ton	4.65	
	운반비(1박2일)	ton	5회	
	운반비(2박3일)	ton	2회	

※ 주의사항

- 1) 연간 발생 예정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실제 위탁물량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물량의 증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2)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,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동안 본 용역의 용역비가 증가하더라도,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.

2. 업무 내용 및 범위

가. 업무 내용 및 범위

1) 수거범위 : 조선대학교 부지 내 실험실 지정폐기물

2) 폐기물 종류

가) 공시약병이라 함은 폐시약 공병 및 플라스틱류 용기 등을 말한다.

나) 폐시약류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시약 기능이 상실된 화학약품 또는 유독물(액,고체) 함유시약, 기타 등을 말한다.

다) 기타고상은 각종 실험에 사용된 모든기구 및 자재 또는 용기 등을 말한다.

라) 실험실 폐기물 보관용기 외부에 표기된 성상과 용기 속 폐기물 성상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용역업체는 용기 속 폐기물 성상을 기준으로 분류 후 처리하여야 한다.

마) 모든 폐기물을 교외로 반출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.

3) 폐기물 위탁처리

- 가)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.
- 나) 관련법에 정한 차량을 이용하여 각 실험실과 단위 건물별로 이동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 · 운반하여야 한다.
- 다) 위탁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단위건물 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상호 입회하여 처리량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라) 폐기물 처리시마다 올바른 시스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마) 폐기물 처리 요청시 각 단위건물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전부 수거한다.
- 바) 대학의 폐기물 배출시 포장 후 배출을 원칙으로 하나 미포장 또는 혼합하여 배출 시 수집 · 운반업체에서 자체 포장 후 수거한다.
- 사) 폐시약류 수거 시 우리대학 단위 건물별 실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포장 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.
- 아) 폐기물 수집·운반 후 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나. 비용처리

- 1) 폐기물 처리비를 폐기물량의 증·감에 따라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지불한다.
- 2) 단가는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, 성상분류 작업 및 수집운반, 최종처리(소각 등)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.
- 3)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량증명서와 운반 및 인계내역 등을 제출받은 후 지급한다.
- 4) 폐기물 수집 후 계량 장소는 대학이 지정한 교내 계근대에서 계량하여야 한다.
(처리량의 무게는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제외한 실중량 값)

다. 기타 특기사항

- 1) 폐기물의 잘못된 성상 분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(폐기물 처리 불가, 법적 문제 등)에 대한 책임 및 대응(보상)은 용역업체에 있다.
- 2) 폐기물 수집 및 운반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.
- 3) 폐기물 수집 운반시 안전한 보호장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만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.
- 4) 용역업체는 수집 · 운반 ·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(보안면, 보안경, 안전복, 안전장갑, 안전화 등)를 제공 및 착용하게 해야 한다.
- 5) 수집 · 운반 · 분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운반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

한 대응(민·형사) 및 보상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.

- 6) 본 용역 수행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7) 원활한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용역업체는 적합한 용기 또는 포장을 제공한다.

라. 계약해제 및 해지

- 1) 채권 가압류, 해산, 파산선고, 인허가 정지 및 취소 등
- 2)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
- 3) 기타 이면 계약 및 기타 부속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등
- 4)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처리를 불이행하여 대학의 명예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